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3. 9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9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 -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7. 3. 14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건설관리과장 김동훈)

가. 제안이유

-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을 「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와 일치하게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·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조정산식을 적용함 (안 제4조).
- 종전의 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로 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(별표 1의 비교 제1호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